

2023년 2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공무직근로자[대체인력] 채용 공고

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) 제10조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공무직근로자(사무실무원)를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3. 14.

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채용인원 및 업무내용

채용분야	채용인원	업무내용
사무실무원 (가급)	1명	○ 식품 및 농·축·수산물 방사능 수거·검사 업무 보조 ○ 식품안전관리과 HACCP 관리 업무 보조

2. 채용자격기준 : 필수자격기준을 만족하고, 응시자격 중 하나 이상 해당자가. 응시자격

채용분야	응시자격
사무 실무원 (가급)	○ (필수)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‘산업기사’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○ 채용예정분야 9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○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※ 관련 분야: 식품(가)공학, 화(공)학, 미생물학, 농(화)학, 수의학, 축산(가공)학 등

나. 우대기준

○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

※ 단,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, 부양의무자, 차상위 계층 및 개별가구

※ 저소득층의 범위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3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(이력서 및 채용지원서) 1부(채용시스템에 입력)

나. 자기소개서 1부(채용시스템에 입력)

다.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

라.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

마.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등 기타해당 증빙서류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
바. 장애인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사.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

가. 접수기간 : 2023. 3. 14.(화) 11:00 ~ 2023. 3. 24.(금) 18:00

나. 제출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://www.mfds.go.kr/employ>)에서 온라인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*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증명서, 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발급받은 원본을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

5. 근무조건 및 보수

가. 신 분 : '공무직근로자' 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
나. 근무부서 :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(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45)

다. 계약기간 : 채용계약일부터 ~ 2024. 3. 31.

※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에 한함

라. 근무시간 : 공무원에 준함(09:00~18:00, 주 5일 근무)

* 부득이한 경우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

마. 월보수액 : 2,010,580원(공제 전 금액)

* 급식비(매월 14만원), 초과근무수당, 명절휴가비(6개월 이상 근무 시) 별도 지급

**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6.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구분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/장소
서류심사	2023. 3. 27.(월)	-	개별(유선 또는 문자)통보
면접시험	추후결정	대구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(대구 동구)	개별(유선 또는 문자)통보
최종발표	추후결정	-	개별(유선 또는 문자)통보

* 시험일정은 채용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기타사항

가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응시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나.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다. 응시자는 응시부서 및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적격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마.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합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
- 합격자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기재된 경우
-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,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

바.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: 박혜수 주무관 ☎ 053-589-2769)